

강 령

모두함께는 국민이 주인인 시장경제의 선봉에서 행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당이다. 우리민족은 강인한 정신과 인화단결로 문화의 부흥과 빛나는 웅대한 역사를 창조한 민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3.1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희생을 격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왔다. 모두함께는 화해하면서 국민이 선진 경제강국을 위하여 시장개혁을 주도해 나간다.

세계경제 질서와 안보질서가 공존하면서 세계평화와 국제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모두함께는 외환의 통화로부터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주경제 부흥에 역점을 둔다. 고령화의 사회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여 국가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과학 산업과 IT산업을 접목하여 중.소.대기업이 상호 공존하여 번창하는 데 앞장선다.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귀히 존중하며, 사회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산업경제의 기술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정치는 후진되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개혁에 앞장 선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 있는 불행한 나라이다. 이에 국민은 이데올로기의 이분된 정신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혼란을 주고 있다. 이를 바로 알리는데 모두함께는 앞장을 선다. 국방을 강화하고 국민안보를 튼튼히하여 국민보호, 안위에 최선을 다 한다.

모두함께의 정책

모두함께는 국민께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모든 정책에 앞장서서 정치의

무를 다한다. 국민은 정치이념의 혼동으로 국민간의 자중지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국가발전에 크나큰 저해의 요인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이용하여 편승하고 있다. 이것은 망국의 병이다. 이를 상생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정치인 빅딜 정책을 화두로 삼아 정치혁신에 앞장선다.

정치개혁 선언

1. 반만년 역사의 뿌리를 찾고 자긍심으로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되찾는다.
2. 튼튼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국가안 위에 역점을 둔다.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성 맞춤형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4. 지구촌화 되고 있는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의 대안방안에 역점을 둔다.
5.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IT산업을 국민생활과 접목시킨다.
6. 시장의 금융통화를 조절하여 외환보유고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시장혁신을 강화한다.
7. 사람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학업을 지양하고, 사람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8.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맞춤형 공급을 시행한다.
9. 노·사간의 분쟁없는 근로문화를 위해 노조측의 간접경영 경험을 갖는 문화를 조성한다.
10.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육성장려에 지원한다.
11.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산업과 접목시켜 시장확대 방안에 역점을 둔다.
12.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교육 개발과 작업장에 대한 사전점검의 예비제도를 도입한다.

13. 청정한 지구환경과 산소공급원 보존지역 설정을 도입한다.

1. 반만년 역사의 줄기를 찾고 자긍심으로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되찾는다.

(역사뿌리 찾기) 일제침략으로 사적사료 소실로 고대선사 시대 등 중단된 역사잇기로 찬란한 역사문화를 바로찾아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민족의 정통성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당연한 국가사업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에 앞장선다.

2. 튼튼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국가안위에 역점을 둔다.

(나라보존 국방정책)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이다. 국방과 교역은 분리되어야 하며, 동·서간의 군사관계는 긴장상태이다. 지리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여건이 상충하는 현 시점에서 외교를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으로 내실을 다지고, 정통 우방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즉응 태세 유지와 자주국방의 첨단 전략무기의 독보적인 개발로 국가보위에 역점을 둔다.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성 맞춤형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젊은 세대의 직업안정화 정책) 청년의 젊은 세대는 가정의 사회기반의 기준 틀을 지켜주는 중요한 가정삶의 터전이다. 청년세대가 흔들리면 안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특기 소질을 개발하여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의 성향을 조사하여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 연구개발을 하여 소질에 맞는 분야의 직업육성에 장·단기의 계획수립으로 개발하여 성과에 최선을 다한다.

4. 지구촌화 되고 있는 국제교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의 대안방안에 역점을 둔다.

(수교국 간의 친선교류 확대로 국익개선) 국제사회의 민간교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외교다변화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홍보하면서

친우방화 정책에 앞장선다. 이와 아울러 첨단 IT를 개발하여 K-POP의 한류문화를 접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호 무역에 주력하여 국익의 선도적인 정책에 앞장선다.

5.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IT산업을 국민생활과 접목시킨다.

(소상인, 중·소기업의 소비연결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선 소비로 연결되는 물류첨단 IT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비가정으로 접목 시킴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앞장선다.

6. 시장의 금융통화를 조절하여 외환보유고의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시장혁신을 강화한다.

(외환보유고를 극복하는 대책) 달러의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은 숙고의 대상이다. 달러를 탈피할 수 있는 제2의 대책 방안을 강구함으로 금융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둔다.

7. 사람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학업을 지양하고 사람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인간존엄성 정책개발) 근대 산업발전으로 경제중심의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윤택한 생활의 질은 높아졌으나 윤리·도덕의 사람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등의 지도층의 인격이 상실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중심의 교육을 위해선 가족형성의 교육과 사회공동체의 교육중심이 절실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경쟁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적인 인성 교육의 공동질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사회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8.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맞춤형 공급을 시행한다.

(서민위주의 주택 안전공급) 서민의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선 지역별로 직업의 밀도와 주택의 수요공급을 분석하여 유·휴 균린지역의 토지공급

량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국가주도의 맞춤형 공급량을 년차별 선순환 정책으로 해결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현실이 되도록 주택정책혁신을 다 한다

9. 노·사간의 분쟁없는 근로문화를 위해 노조측의 간접경영의 경험을 갖는 문화를 조성한다.

(노·사간의 갈등 해소) 노·사분쟁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력을 하락시키며, 물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 분쟁 없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측이 시장경제의 사측의 애로사항과 경영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장의 건전성을 함께 대처하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 노동측의 이해를 돋기위해 단위 노·사간의 잣은 대화와 간접경영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노·사 문화 정착에 앞장 선다.

10.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육성장려에 지원한다.

(선진과학 육성 장려) 우수 영재인력 교육정책을 개선하여 국가가 지원하면서 첨단 과학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개발에 주력하고, 지적재산권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기업을 국가에서 보호함으로 첨단교육정책에 주력한다. 또한 공업의 각 분야에 걸쳐 안정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1. 노령화세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산업과 접목시켜 시장참여 확대 방안에 역점을 둔다.

(노령화 인구에 대한 정책개발) 노령화되어가는 세대에 경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IT와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소비에 따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선다.

1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개발과 작업장에 대한 사전점검의 예비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사고 대책개발) 사회 위험요소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무사고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위험요소를 집중 관리하며 가스, 추

락, 다중 집합장소, 템새간극, 안전복장, 안전도구 등 사전안전 점검 제를 도입 개발한다

13. 청정한 지구환경과 산소공급원 보존지역 설정을 도입한다.

(저탄소 규제 및 산소공급 정책개발) 지구환경을 위해 세계환경협약기구의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도시 산소공급을 위한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국토 환경조성, 자연생태계 보전, 균린지역 녹화, 재생에너지 확대, 부존 자원 개발억제를 시행한다. 모두함께는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정책개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당 헌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당의 명칭은 ‘모두함께’라 한다.

제2조 【목적】 모두함께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찬란한 문화창달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헌법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의 기본인 자유, 민주, 정의, 공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시장경제의 발전을 주도한다. 자주적인 국방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며, 우방국과 동맹을 강화한다.

능동적인 외교로 국제질에 적극 참여하며, 노령화의 사회복지 조성을 마련하며, 다양성의 교육발전에 주력하고, 정치발전을 위하여 모두함께의 대의정신으로 정의사회와 정치협치에 앞장선다. 미래세대와 연대를 강화하며, 정치참여의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 삶의 선진화를 위해 공동체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법치사회를 지향하고, 국민경제부흥에 앞장선다.

제3조 【구성】 ①모두함께는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공직선거를 위하여 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중앙당, 시·도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시, 도(이하 시·도라 “칭”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입, 탈당요건】 ①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 【책임당원】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권리및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킬 의무를 가진다.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③ 국가 주요 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 59조에 따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당원봉사와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봉사를 장려하여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시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대통령의 당직겸임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당직만 가질 수 있다.

제8조 【당과 대통령】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② 당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9조 【당비납부와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10조 【상벌】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한다, 단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은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1조 【구성】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500명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8. 재정위원
9. 국책자문위원
10.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1. 당 소속 자치구 시.군의장
12. 최고회의 의결로 선임된 당원
13.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제12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 채택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와 주요 당직자로 구성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 창당대회 이후에 2년부터 의장이 전당대회를 소집한다.

제14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③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를 대의기구로 한다.

④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창당대회를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로 본다.

⑤ 전당대회 의장은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기관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하여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7조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 1.당 대표
- 2.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 3.당 소속 국회부의장
- 4.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 5.상임고문
- 6.사무총장
- 7.중앙위원회 의장
- 8.시·도당 위원장
- 9.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 10.당 소속 국회의원
- 11.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12.국책자문위원
- 13.재정위원회 임원
- 14.시,도의회 의장
- 15.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 16.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 17.당 소속 자치구, 시, 군 의장
- 18.국책자문위원
- 19.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 20.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 21.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제18조 【기능】 ①전국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 1.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회 위원회에 최고 위원회를 추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정안건의 채택은 참석위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의장단】 ①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부의장
3. 정책조정위원장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제21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5. 당 소속 시, 도의회 대표의원
6. 당소속 자치구, 시, 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④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 부의장

3. 정책조정위원장

⑤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 【소집 및 기능】 ① 규정 제21조 제1항의 소집은 3 일전에 이를 공고하고, 참석위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 기본정책, 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요구

5.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7. 당헌, 당규, 윤리규칙, 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 해석

8.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헌, 당규, 윤리규칙, 윤리강령 적용의 당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

9. 당의 주요정책에 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③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제23조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당직자회의

2.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③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⑤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 【당 대표선출】 ①창당으로 인한 당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당원 참석 4분의 3의 찬성으로 추대 선출한다.

②차기 당 대표는 당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 득표한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③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 대표를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60%,여론조사결과를 40%반영한다.,

④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원내대표유고시에는.새로운 원내대표선출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선출직 최고위원의 선출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②선출직 최고위원은 3명으로 정하고, 선거의 후보자가 3명 미만일 때에는 전국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창당으로 인한 최고 위원은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지명하여 당원참석 4분의 3의 찬성으로 추대로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청년 최고위원】 ①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청년최고위원 선거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지명한다.

③창당대회일 때에는 창당참석 당원의 4분의 3의 추대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선거인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 【임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권한대행】 ①당 대표가 퀸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 까지는 원내 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②제1항의 선거로 인하여 선출된 최고위원이 없을 때에는 당무를 겸한 최고위원이 대행한다.

제30조 【자문 및 보조기관】 ①당무에 관한 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원 및 사회지도급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회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당무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대표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당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31조 【구성】 ①당무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제25조제3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3인

4. 제26조의제3항에 의해 선출된 청년최고위원 1인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6. 정책위원회 의장

③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32조 【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협의

4.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 6.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 7.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8.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 9.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3조 【소집 및 의사】 ①최고위원회의는 월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최고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5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3절 당무집행기구

제35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제36조 【당무집행기구】 ①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을 두고 당 대표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②중앙사무처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37조 【임명】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8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윤리위원회

제39조 【구성】 ①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유지 및 기풍진작을 위해 윤리

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1은 당외인 사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경우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윤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관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 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의결, 당무권 정지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제5절 당무감사위원회

제41조 【구성】 ①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대표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1은 당외인 사로 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 【기능】 ① 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현, 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3.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4.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5.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6.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 중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절 상설위원회

제43조 【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국책자문위원회

2. 중앙위원회

3. 국가안보위원회

4. 인권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법률자문위원회

7. 여성위원회

8. 청년위원회

9. 지방자체위원회

10. 노동위원회

11. 통일위원회

12. 중소기업위원회

13. 소상공인위원회

14. 국민통합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중앙연수원

제44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중앙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책연구소

제45조 【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연구개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당무연석회의

제46조 【구성및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시.도당

제47조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4.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5. 중앙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
 7. 당 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② 시·도당 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과 같다.

1. 전당대회대의원선출
 2. 제18조제20조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장 선출
 3. 시·도당 위원장선출
 4.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5. 당 소속 시·도당 각종 상시위원회 운영위원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부위원장 을 임명한다.

제49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과 함께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및 창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④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은 둔다

③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장을 소집하여 당무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원외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 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1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54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제22조제3항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선임

4.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 국가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제출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사안의 심의.의결
7. 당무에 대한 의견개진 및 보고청취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54조 【소집】 ①의원총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의장은 소속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55조 【회의】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의결정족수】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7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56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58조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정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제59조 【선출 및 임기】 ① 의원총회에서 선출방식은 투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위원회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의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 한다.

제61조 【원내부대표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인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62조 【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부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63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 대처기관으로서 의원총회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

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정책위 의장 또는 정책조정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4조 【기능】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
 - 2.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 4.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 5.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 ②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정책위원회 의장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정책위원회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정책위원회의 주재
- 2.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당정협의업무를 총괄 조정
- 4.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추천

제6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66조 【후보자 선출】 ①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조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

②전1항의 결과에 못미쳤을 때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값을 3분의 2를 적용하여 선출하다.

제67조 【대통령선거인단 구성】 ①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1.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 2.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 ②대통령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 【후보자의 자격】 ①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

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69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0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회의 참석하여 당무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 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추천 기구

제72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을 둔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은 당외인사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천관리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공모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신청

3. 우선 추천지역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⑨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제73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를 둔다.

②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74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①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75조 【후보자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여 당헌 제6장의(공직후보자추천기구)가 수행한다.

제76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제77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직업 등의 국민대표성 및 전문성과 당에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율 25% 이상 포함한다.

제78조 【시·도지사후보자추천】 ①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하고, 이 경우 시·도선거인단은 시·도의 책임당원을 포함하여 유권자 0.1%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9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자치구, 시, 구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 시, 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②지역구 시·도의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제8장 회계

제80조 【회계년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1조 【예산결산위원회】 ①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재정위원장, 중앙당

총무국장, 공인회계사 총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략기획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년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장 당헌 개정

제82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제83조 【의결절차】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당헌 개정안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 반수로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 【개정당헌의 공포】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

정된 때에는 당 대표는 자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85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6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 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7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의 창당, 개편, 해산은 창당 준비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부칙

제1조 【효력】 이 당헌은 2023년 4월 2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최고 위원선임 후 최고회의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